

한국원자력학회 포상규정

제 정 1992. 07. 09
개 정 2000. 03. 15
개 정 2007. 02. 27
개 정 2009. 12. 10
개 정 2010. 08. 26
개 정 2010. 10. 08
개 정 2010. 12. 17
개 정 2014. 03. 21
개 정 2014. 05. 02
개 정 2014. 12. 05
개 정 2015. 03. 13
개 정 2018. 08. 27
개 정 2022. 07. 08
개 정 2022. 08. 26
개 정 2023. 08. 25
개 정 2025. 03. 07
개 정 2025. 10. 17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(이하 학회) 정관시행세칙 제3장 및 제5장의2 제20조에 의거, 포상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상의 종류)

- ① 원자력에 관한 학술발전 및 기술향상에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에게 학술상, 기술상, 우수논문상을 포상할 수 있다.
- ② 원자력분야의 발전과 학회 대내외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로상을 포상할 수 있다.
- ③ 학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,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포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기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상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④ 특별상은 재원에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을 추가할 수 있다.
- ⑤ 이외에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추천을 의뢰할 경우 그 목적에 맞게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제 3 조 (수상자 선정) 포상 및 장학위원회 (이하 위원회)는 제2장 각 상의 수상자 선정절차에 따라 최종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수상자를 확정한다. 만약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 해의 수상자를 선정

하지 않을 수 있다. 단, 평가위원의 정당한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.

제 4 조 (제한사항) 학술상, 기술상 및 공로상은 동일인(단체)에게 같은 상을 5년 내에 2회 이상 수여하지 않는다.

제 5 조 (시상) ① 학회의 상은 포상이유를 명기하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, 부상으로 적절한 상금을 줄 수 있다.

② 시상은 정기총회 또는 특별행사에서 한다.

제 2 장 수상자 선정

제 6 조 (학술상) ① 학술상은 원자력학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개인회원 중 연 1명을 선정하여 수여한다. 단, 위원회의 선정심사결과가 동등한 경우는 2명까지 공동 수여할 수 있다.

② 학술상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연구부회장
2. 학술상 기 수상자
3. 정회원 3인 이상

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

④ 추천자는 원자력 학술발전에 기여한 후보자의 업적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- 업적명칭 및 전문분야
- 업적내용 및 우수성
- 심사일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대표논문 5편 이내(NET 게재 논문 1편 이상 포함)의 리스트와 전자파일을 제출한다.

⑤ 후보자 심사는 업적자료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와 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한다. 각 평가에 필요한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.

⑥ 위원회는 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점수를 평균한 후 최고 득점자를 최종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.

제 7 조 (기술상) ① 기술상은 원자력기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단체 회원중 연 1명(단체)을 선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. 단, 위원회의 선정심사결과가 동등한 경우는 2명(단체)까지 공동 수여할 수 있다.

② 기술상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연구부회장
2. 기술상 기 수상자
3. 정회원 3인 이상

③ 제 6조 3항과 동일

④ 추천자는 원자력 기술발전에 기여한 후보자의 업적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- 업적명칭 및 기술분야

- 업적내용 및 우수성

- 위 업적내용과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학회 회원 3인의 추천서 및 인증서 (사본) 등

⑤ 제 6조 5항과 동일

⑥ 제 6조 6항과 동일

제 8 조 (우수논문상) ① 우수논문상은 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과 학회지 우수논문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.

② 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. 위원장은 각 연구부회장의 추천을 받아, 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부회의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각 연구부회별 1편 내외의 우수논문을 선정한다.

③ 학회지 우수논문상은 학회지(NET)에 게재된 논문 중 피인용 실적과 질이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, 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연간 6편 내외의 우수논문을 선정한다.

제 9 조 (공로상) ① 공로상은 원자력분야의 발전과 학회대내외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.

② 수상 후보자는 학회 회원에 한정하지 않는다.

③ 학회장이 수상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가 승인으로 수상자를 확정한다.

제 10 조 (학회지발전기여상) (2023. 08. 25 삭제)

제 11 조 (과총 우수논문상 추천) ① 과총이 학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해당년도에 학회지 'NET'에 발표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후보로 추천한다.

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인 약간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대상 논문 2~3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.

제 12 조 (기타) 정부포상 및 기타 상의 후보자 선정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3 장 감사패 및 감사장 수여

제 13 조 (감사패) ①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원자력 안전과 이용에 상당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② 수상 후보자는 학회 회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.

③ 수상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4 조 (감사장) ① 원자력 학회 임원, 연구부회장 및 연구부회 임원,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,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, 대변인 및 부대변인 등 학회활동에 봉사를 마친자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. 다만,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거나 활동이 현격히 미흡한 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다.

② 수상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표1의 봉사기간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봉사기간은 누적되지만 겸임에 따른 중복 계산은 하지 않는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표1. 봉사기간에 따른 기념품(순금상패) 지급기준

구분	임기 단위	1년 이상 ~2년 미만	2년 이상 ~4년 미만	4년 이상 ~6년 미만	6년 이상
임원	1년	0.5돈 (1.875g)	1돈 (3.75g)	1.5돈 (5.625g)	2돈 (7.5g)
고급정책연구소장	1년				
편집위원장	3년				
부편집위원장	3년				
연구회장	2년				
지부장	2년				